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468
----------	------

제안년월일: 2020년 4월 22일
제안자: 환경수자원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정진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402호)과 유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413호)을 일괄 심사한 결과,
-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건설기계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포함시킨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개정에 맞춰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따라 노후 건설기계를 저공해 조치 명령대상에 포함시키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 또한, 2020년 4월 3일자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명 및 근거조항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조례의 근거 및 정의, 적용범위 등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조)
- 나. 노후 건설기계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포함토록 규정함(안 제15조2 신설)
- 다. 저공해조치 명령대상을 자동차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소유자로 확대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 마.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를 6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 바. 조기폐차한 건설기계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 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0조 신설)
- 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문 및 다른 조례 정비
(안 제2조, 제3조, 제15조, 제19조,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원과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5조”를 “지원과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5조”로 하고, “지원을 위해”를 “지원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그 소요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필요한 자금”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서울특별시자치구·청소대행기관”을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소대행기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용자한도액”을 “재정지원한도액”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용자는”을 “용자 조건은”으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하”를 “이하의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대출 일부터 기산, 매년도”를 “대출한 날부터 계산하고, 매 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동종”을 “같은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은행법」 제2조제2호”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고, “용자대상업체에”를 “용자대상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금융기관”을 “수탁은행”으로 하고,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자금 대하차용신청서”를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자금대하차용신청서”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개최하는”을 “개최할”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조정의”를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금융

기관”을 “수탁은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탁금융기관”을 “수탁은행”으로, “용자 대상업체”를 “용자대상자”로, “대출 한다”를 “대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금융기관”을 “수탁은행”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를 “특별법 제30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건설기계의 종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이하 “의무대상 건설기계”라 한다)로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3. 그 밖에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감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기계

제16조 본문 중 “소유자”를 “또는 의무대상 건설기계 소유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소유자”를 “또는 의무대상 건설기계 소유자”로 하고,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으로 하고, “배출가스 종합검사결과”를 “자동차종합검사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한 자동차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자동차에 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을 “특별법 또는”으로 한다.

1. 제16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경우
2.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5등급 자동차 소유자가 조기폐차한 경우
3. 제1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소유자가 조기폐차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경우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특정 용도 자동차의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 제목“(그 밖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을“(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각 호의”로 하고, “설치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하는 경우”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 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
2.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명령(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명령

별지 제1호서식 중 제목 “천연가스자동차구입자금대하차용신청서”를 “천연

가스자동차 구입자금대하차용신청서”로 하며, 서식 본문 중 “의하여 서울특별시 천연가스자동차구입재정지원자금”을 “따라 서울특별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자금”으로 하고, “상환조건에 의하여”를 “상환조건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③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를 “제6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58조 또는 특별법 제27조”를 “제58조”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법 제28조의2”를 “특별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을 “특별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특별법 제25조제6항제2호”를 “특별법 제26조제5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로 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사업 지원과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지원과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5조----- ----- 지원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경우를 말한다.</p> <p>2. “이륜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p> <p>3. “직화구이 음식점”이란 숯, 가스 등의 연료를 사용하여 육류, 생선류 등을 직접구이하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음식점을 말한다.</p> <p>4.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p>	<p>제2조(정의) ----- -----.</p> <p>1. -----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p> <p>2. --- 「자동차관리법」 제3조----- -----.</p> <p><삭 제></p> <p>4.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p>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보급, 저공해 조치 또는 조기폐차 권고,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재정지원대상)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보조 및 용자(이하 “재정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는 재정지원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생략)
2. 천연가스청소차를 구입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소대행기관 또는 사업자
3. (생략)

제5조(재정지원한도액) 자금의 용자한도액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조건 등) ① 자금의 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생략)

제1항제1호-----.

제3조(적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따른다.

제4조(재정지원대상) -----
----- 필
요한 자금-----
----- 「대기환경보
전법」 제58조제3항 -----
-----.

1. (현행과 같음)
2. ----- 서울특별
시 자치구·청소대행기관 -----
3. (현행과 같음)

제5조(재정지원한도액) ----- 재정지원한
도액-----
-----.

제6조(재정지원조건 등) ① ----- 용자
조건은 ----- 따른다.

1. (현행과 같음)

2. 용자금리 : 연 5퍼센트 이하에서 시장
이 정하는 금리

3. 이자계산 및 징수 : 대출 일부부터 기산,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 징수

② (생략)

1. (생략)

2. 연료 공급가격 변동으로 천연가스자
동차의 운영비용이 동종의 경유자동차
보다 많이 소요되어 경쟁력을 상실한
때

③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용자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자금
의 용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은행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자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은행(이하 “수탁은행”이라 한
다)에 용자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수
탁은행이 용자대상업체에 적용하는 대출
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천
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자금대하차용신
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심의회 개최 등) ① ~ ③
(생략)

2. ----- 이하의 범위-----

3. ----- 대출한 날부터 계산
하고, 매 해-----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같은 종류-----

③ -----

----- 따른다-----

제7조(용자사무의 위탁 등) ① -----
----- 「은행
법」 제2조제1항제2호-----
-----.

----- 용자대상자에게 -----
-----.

② 수탁은행----- 천
연가스자동차 구입자금대하차용신청서-
-----.

제10조(재정지원의회 개최 등) ① ~ ③ (현
행과 같음)

1. ~ 5. (생략)

④ (생략)

⑤ 심의회는 개최하는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해산한다.

제11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생략)

제12조(재정지원금액의 조정 등) ① 시장은 재정지원신청금액이 재정지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대상자별로 재정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그 조정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재정지원대상자 및 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재정지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체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자금을 대출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자금

1.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개최할 -----
-----.

제11조(의장의 직무) ① -----
-----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재정지원금액의 조정 등) ① -----

----- 조정 -----
-----.

② -----
----- 수탁은행 -----
-----.

제13조(융자금대출) ① 수탁은행 -----
----- 융자대상자 ----- 수탁
은행 -----
- 대출한다.

② -----
- 수탁은행 -----.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

의 적정사용여부 등을 연 2회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
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
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등급 중 5등급이면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출고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
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
된 의무대상 자동차. 다만, 출고당시보
다 향상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
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 따라야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
류) -----
특별법 제30조제1호-----

-----.

1. (현행과 같음)

2. ----- 「대기환경보전법」 제2
조제16호 -----

-----.

제15조의2(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건설기계
의 종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건설기
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건설기계(이하 “의무대상 건설기계”

제16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시장은 의무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의무대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17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한다)로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3. 그 밖에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기계

제16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
----- 또는 의무대상 건설기계 소유자 -----

1. ~ 2. (현행과 같음)

제17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
- 또는 의무대상 건설기계 소유자 ---
날부터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대상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종합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은 저공해 조치 기간을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차기 검사기간)까지 유예(재유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예 받은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그 유예사유가 해제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한 자동차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 설>

② -----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 자동차종합검사 결과 -----

-----.

③ -----

날부터 -----
-----.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1. 제16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경우
2.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5등급 자동차 소유자가 조기폐차한 경우
3. 제1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소유자가 조기폐차한 경우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20조(그 밖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

2. 이륜차

3. 직화구이 음식점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대기오염 물질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경우

② ----- 특별법 또는 -----

-----.

③ 시장은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특정 용도 자동차의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① 시장은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 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

2.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명령(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명령

<삭 제>

배출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개인이나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천연가스자동차구입자금대하차용신청서

- 1. 대하금액(총액) 금 원정(W)
- 2. 대하기간
- 3. 이 자 율 대하금리 년 분
- 대출금리 년 분
- 4. 상환조건
- 5. 기 타

위 금액을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천연가스자동차구입재정지원자금의 운용·관리위탁에 따른 대하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차용인 은행장(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② ----- 제1항 각 호의 -----

----- 설치하는 경우 -----

-----.

[별지 제1호 서식]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자금대하차용신청서

- 1. 대하금액(총액) 금 원정(W)
- 2. 대하기간
- 3. 이 자 율 대하금리 년 분
- 대출금리 년 분
- 4. 상환조건
- 5. 기 타

위 금액을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자금의 운용·관리위탁에 따른 대하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따라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차용인 은행장(인)
서울특별시장 귀하